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세부기준

(2019. 04. 04. 운영지원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발명진흥법 제19조 |
|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연습 총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 사건·실시계획 | <p>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대역)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 <p>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 기록물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p>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대비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 전시 소방대책 | <p>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빈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 <p>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관리(방호) -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p>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p>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시설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p>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청구서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사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p>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p>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p>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 | 비고 |
|--------------------|--|--|
| 감사 | ○ 불시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 |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 감독·지도점검 | ○ 불시 지도점검계획 ○ 불시 조사·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 |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 시험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입찰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 기술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 공개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 인사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사항 ○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 |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대상정보 | | 비고 |
|----------|---|--|
|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p>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가능)</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병가·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p>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명예훼손·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가족관계 ○ 학력 및 경력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p>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p> |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등기소, 금융기관 등)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예산서 ○ 총사업비 일 주소 ○ 지급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공인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 <p>공개시 해당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p>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p>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p>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p>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